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51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안 제11조의2제1항)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 ----- ----- ----- ----- ----- ----- ---. <u>이 경우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u>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제2조(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휘발유, 경유 등을 공급하는 내연기관차 주유소는 주유관리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¹⁾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²⁾라 하더라도 쉽게 주유가 가능한 반면,

전기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높은 위치의 충전기, 무겁고 긴 케이블, 불편한 작동 방법 및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인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불편한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부는 2019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충전기 화면의 조작부 위치가 낮고, 커넥터 무게를 줄인 교통약자용 급속충전시설을 보급³⁾ 중에 있으나,

1) 소방청에 따르면, 셀프주유소는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유소 14,612개소 가운데 5,931개소로 40.5%를 차지하는 수치임. (소방청 조간 보도자료, 2024.6.10.)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2022년부터는 급속충전시설 전량을 교통약자용으로 설치 중임(2022년 1,140기, 2023년 410기).

현재 교통약자용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⁴⁾,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전기차 충전 편의 개선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전기차 구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현행법 체계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⁵⁾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⁶⁾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장애인용 충전시설을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축시설인 경우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4)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서 포괄적인 “국가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 부칙 제2조의 취지는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법률 제18323호, 시행 2022.1.28.) 당시, 전기차 등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의무설치 대상을 기축 시설인 경우까지로 확대⁷⁾한 바 있어, 소급적용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규정과 개정안에 따른 장애인용 충전시설의 소급설치 규정을 통일 시키려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⁸⁾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완료한 자에게 장애인용 충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을 추가로 부담⁹⁾하게 하는 등 침익적 소지가 있는 점을 들어,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시설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6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8. 법률 제18323호)

부칙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대전광역시 동구·서구·유성구

9) 충전시설은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요금 발생, 유지관리용역 비용 등 별도의 운영비용이 소요되어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의 충전시설은 건축주(소유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의견임.